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98

발의연월일: 2025. 5. 26.

발 의 자:김선민·황운하·신장식

김준형 · 장종태 · 정춘생

백선희 · 서왕진 · 김남희

전진숙 · 전종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,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노동계, 비영리민간단체,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, 비영리민간단체,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것임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자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17명"을 "23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국가환자안전위원회) ①	제8조(국가환자안전위원회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	②
함한 <u>17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	<u>23명</u>
성한다.	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	③
지부차관으로 하고, 위원회의	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	
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	
또는 위촉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제3호의</u>
	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
	되도록 하여야 한다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